

「2026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 참가 지원」 모집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보유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 파트너링 참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6.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명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6 참가지원
- 지원목적
 - 기술상담회 및 파트너링 참가를 통한 도내 기업의 기술거래 기회 제공
 - 국내 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잠재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 유망기술 및 사업에 대한 사업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
- 지원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소 이상 경기도 소재
- 지원내용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6 참가 등록비 기업별 최대 1,500천원 지원
 - (지원규모) 선정기업 수는 지원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20개사 이상, 예산규모 30,000천원)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6 개요

행사명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6
개최기간	2026. 7. 1.(수) ~ 7. 3.(금)
개최지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주최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파트너링, 세미나, 컨설팅, IR & 프레젠테이션 등
참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매각/매입, 라이선싱 및 제휴, 공동연구, 기술투자, 벤처투자, M&A - 마케팅제휴, 보유기술(제품)의 글로벌시장 공동개척 - 전략적 기술 컨버전스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신규시장 창출 등 ◆ 컨설팅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거래/기술평가, 특허/법률, 투자, AI·빅데이터/디지털 전환, 규제·인허가, 사업개발/정보, R&D 지원, CROs/CMOs/CDMOs/CSOs ◆ 기타유형
등록비 지원 (비회원사 기준)	500,000원/1인
인터비즈 홈페이지	https://www.interbiz.or.kr/

□ 지원금 지급방식 : 수행기업 등록비 선(先) 집행 후, 지원금 후(後)지급

2 신청안내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5. 07.(목)

□ 신청기간 : 2026. 4. 16.(목) ~ 5. 07.(목)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함(시간엄수)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은 지원 제외

※ 차후 신청·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고기간 연장 또는 추가모집을 실시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love901024@gbsa.or.kr)

○ 신청서(양식)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참가신청서 및 기술소개서(직인 날인본)	서식1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종 수혜금지 서약서(직인 날인본)	서식2
	③ 기업 범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업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인서(직인 날인본)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⑤ 최근 2년 2024-25년 결산재무제표(2026.01.01. 이후 발급분) ※ '25년 미발행 건에 한해 세무서 날인본 제출 가능	
선택	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1) 국세 : 국세청 홈택스 2) 지방세 : 정부24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⑦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사본	특허권자가 참가신청 기업 및 대표소유만 인정
	⑧ 규격인증서 사본	국내 및 해외규격인증 사본
	⑨ 가산점 증빙 사본	[별첨1] 선정 평가표 참고
	⑩ 범위반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감점에 대한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직인 날인본)	
	⑪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직인 날인본)	서식3

□ 지원 리프레시 제도 시행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지원 참가기업당 3회까지 지원 이후 1년간 지원 제한 기간 뒤, 2년차에 재지원 가능
- 기준연도 : 2019년 과제부터 적용
예) '19년, '22년, '23년 3회 수혜기업은 '24 지원 불가 / '25년에 재지원 가능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사전적격심사	서면평가	결과통보
· 신청자격, 결격사유 · 범위반사실 등 점검 · 평가대상 확정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제출 서류 평가	· 선정 여부 안내

□ 평가방법

- 분야별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60점 이상기업)
- 가산점 적용 :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용(최대 5점 적용)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업지원 총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 평가기준 : 「기업 선정 평가표(별첨1)」에 따른 평가

□ 선정안내 : 2026. 5월 3주차(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 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4

추진절차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6

절 차		내 용
① 공고접수	'26. 4. 16. ~ 5. 07.	. 파트너링 참가기업 모집 접수
② 기업 선정	5월 3-4주차(예정)	. 선정 결과안내
③ 파트너링 등록	개별진행	. 선정기업 자사 부담으로 사전 진행
④ 파트너링 운영	개별진행	. 기업별 파트너링 미팅 일정에 맞춘 진행
⑤ 관련 서류 제출	인터비즈 참가 운영완료 후	. 파트너링 운영 결과 및 증빙서류 제출
⑥ 지원금 지급	자료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⑦ 성과추적	'26. 8. ~ 12월	. 파트너링 지원 성과 추적(11월-12월 예정)

5

문의처

전담기관	본부/부서	담당자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기업지원팀	박은경	031-888-6127 love901024@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 공개
 - 연구 부정 행위자는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선정 취소)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신청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수행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지원포기 공문 제출)
- 신청기업은 경기도 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없음. 국비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참가지원금은 전액 환수 예정. 중복 여부에 대한 해석은 신청기업이 경기도 외 지원 예정 기관(정부·지자체 등)의 검토를 통해 최종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며, 향후 중복여부에 따른 기업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은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향후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지원기관(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7 지원제한

- ※ 접수마감일 [26. 5. 7.(목)]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보조금(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①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② 기업의 부도
-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④ 기업(대표)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2년 재무제표상 연속으로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1) 사업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 예외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신청기업은 자본 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

- 붙임 : (서식1) 참가 신청서 및 기술소개서 1부.
 (서식2) 기타서류(참여의사확약서 등) 1부.
 (서식3) 법 위반 관련 제출서류 1부.

별첨1

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준	
계			100	
정성 평가	기술성 (60)	기술(제품)의 우수성(차별성/혁신성) 및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시장성) 평가		60
	사업성 (10)	기대효과	기술(제품)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등의 기대효과	10
정량 평가	기업 (30)	국내/해외 규격인증	국내/해외 규격인증서 2점/건 ※ 최대 10점 인정 (인증서 증빙 필수제출)	10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특허 등록 2점/건, 출원 1점/건 ※ 최대 10점 인정 (특허 증빙 필수제출)	10
		매출액 (재무제표 기준)	10억 미만 (10) 10억 이상 ~ 50억 미만 (8) 50억 이상 ~ 100억 미만 (6) 100억 ~ 500억 미만 (4) 500억 이상 (2) ※ 최근 2년 매출액 평균 적용 (재무제표 필수제출)	10
구 분	가감점 내용		점수	비고
가점	[공공인증서] 여성기업(1점)		1	여성기업확인서
	[창업기업] 공고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2점) * 창업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_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로만 가점 인정(사업자등록증 불가)		2	창업기업확인서*
	[소재지] 경기 북부지역 소재 기업(2점) - 고양,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군, 파주, 포천 - 본사, 공장, 부설 연구소 중 1개(증빙서류 필수 제출) * 공고일 이후 기준으로 북부지역에 소재함이 증명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등)만 가점 인정 (이전 자료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업이전 등의 이슈로 가점 인정 불가)		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제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부내용 아래의 '별첨3' 참고)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적용	

※ 가점 인정에 대한 증빙은 비교란의 '증빙서류' 확인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 인정에 대한 증빙 미충족시 가점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며,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별첨2

주력 사업 영역 분류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

바이오 의약품산업		바이오 환경산업	
바이오항생제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백신		환경처리, 자원재 활용 제제 및 서비스	
호르몬제		환경오염 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혈액제제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세포기반치료제		바이오센서	
유전자의약품		체외진단	
바이오진단시약		바이오센서/마커 장착 의료기기	
효소 및 생균의약품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소재 의약품		바이오 장비·기기산업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합성·생산 기기	
기타 바이오의약품		세포 분석·배양 장비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바이오고분자		연구 및 생산장비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공정용 부품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기타 바이오장비 및 기기	
바이오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바이오 자원산업	
바이오농약 및 비료		종자 및 묘목	
바이오연료		유전자변형 생물체	
기타 바이오화학·에너지제품		실험동물	
바이오 식품산업		기타 바이오자원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서비스산업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바이오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식품첨가물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발효식품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사료첨가제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바이오식품		가공 및 처리·보관 서비스	
		기타 바이오산업 서비스	

- (추진목적)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 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적용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❽ 폐기물관리법, ❹ 대기환경보전법, ❸ 소음진동관리법, ❹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❶ 지방세기본법
- (조회기간) 사업 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적용
-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제한조건)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사실확인) 사업부서에서 선정(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법 위반사실 조회·확인(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은 기업 제출분을 통해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다. (환경) 道 기후환경관리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이의·구제신청)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구제)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서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국내 규격인증 대상 리스트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법정무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을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 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공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올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싱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옴스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리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쿨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상기 외 민간인증의 경우는 인정 불가

해외 규격인증 대상 리스트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AM (미국가전제조협회)	
	AHRI (미국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공기정화물인증)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로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DLC (복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품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벨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Greenguard(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할로겐안전인증)	HIRF(고강도전자기장)	
	IACP(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복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g(미국전자파적합성규격)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D(미국해군장비규격)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PA(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창호단열규정)	
	NGV2(고압연료탱크규격)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MMA(미국요트레일러인증)	NOP(유기제품인증)	NPC(미국위생도기규격)	
	NRC(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복미휴대폰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CAP(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환경성주장검증)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복미건축자재마크)	
	WHI(복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미국수질협회)	-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DNV GL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접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관련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유럽프라이버시셀)	FIBC(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Green Dot(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ISCC(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M Classification(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유럽에코라벨)		Novel Food(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덴마크유기농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독일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BDIH(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독일해군장비규격)
	Dermatest(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독일규격협회)	DVGW(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LFGB(독일식품용품법)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독일감향성시험)
	MPA(독일건축자재인증)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독일보험협회인증)	-	--
영국	Allergy UK(영국알러지협회)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BA(영국건자재인증)	BSI(영국표준협회)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FIRA(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영국선급협회)
	SCPN(영국화장품등록)	UK Cosmetic Regulation(영국화장품등록)	UK REACH(영국화학물질등록)
	UKCA(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프랑스선급협회)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 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프랑스GTT선급)
	NF(프랑스표준규격)	-	-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노르웨이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
일본	BAA(일본자전거승인)	BOKEN(일본방직검사협회)	CMJ 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F☆☆☆☆(일본친환경규격)	FESC(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암호모듈인증)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JFSL(일본식품위생법-완구)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A(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S(일본표준규격)	JISEC(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SFL(일본식품위생법)	JWWA(일본상수도협회)	NK(일본선급협회)
	PMDA(JPAL)(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일본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인증)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IAA(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JAPANMIC, JATE, TELECOM)	일본불연재료인증
	FireProtectionCertificate(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
러시아	Fire Protection Certificate(소방안전증명서)	FSB(러시아암호화인증)	GOST(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RS(러시아선급협회)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검독청(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
말레이시아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MS 144(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IFETEL(멕시코통신인증)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	-
대만	BSMI(대만표준검험국)	CNS(대만국가표준)	CR(대만선급)
	NCC(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환경보호인증마크)	TFDA(대만의료기기)
	VSC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
태국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

국가별	규격인증		
터키	KKDIK (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 (터키강제인증)	-
싱가포르	BCA Green Mark(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표준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ARAI(인도자동차협회)	BIS(인도제품인증)	CDSCO(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인도식약청)
	IBR(인도보일러규정)	IRS(인도선급인증)	MTCTE(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인도철도인증)	STQC(인도생체인증장치인증)	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인도네시아	BKI(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 및사이버보안용품안전인증)
	CCS(중국선급인증)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REACH(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중국철도제품인증)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중국농업부등록)	LA mark(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중국수입식품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CQC, 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중동	GCC(중동적합성마크)	-	-
캐나다	CAN/CGSB155.20(캐나다방염염단인증)	CCMC(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캐나다화학제품안전신고)
	CRN(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캐나다용접협회)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
페루	Registro sanitario(보건등록증)	-	-
콜롬비아	ICONTEC(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변압기강제인증)
	RETIQ(콜롬비아에너지효율)	-	-
폴란드	B mark(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제품등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ERC(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필리핀표준규격인증)
	PEFC(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필리핀식품의약품청)	-
라오스	MPT(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품화학제품등록
호주	ACRS(호주신뢰성인증)	ADR(호주자동차안전 및 배기량규격)	AFRDI(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호주규격협회)	ASD(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PS(호주개인보호장비)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제품등록	-	-
홍콩	Green Label(홍콩그린라벨)	HKSM(홍콩제품안전마크)	OFCA(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	CRA(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이란강제인증)	MOH(이란보건부등록)

국가별	규격인증		
나이지리아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아랍 에미레이트	Dubai Civil Defence(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전자기기인증제도)	EQM(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TRA(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	-
이스라엘	IAI(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Ukr SEPRO(우크라이나제품인증)	-	-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
칠레	SEC(칠레에너지관리국)	-	-
미얀마	MPU(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	-
이집트	CAPA(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
뉴질랜드	ECNZ(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
캄보디아	ISC(캄보디아안전표준)	-	-
국제	AEC-Q(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RFID제품인증)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제품승인규격)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EEAM(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hip card approval(스마트카드승인)	CMMI Lv3~Lv5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차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I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EHP003(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이더캐트적합성테스트)	FAIR TRADE(국제공정무역마크)
	FIDO(생체인증)	FIFA IMS(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국제산림관리협회의회)	FTC(화염시험인증)	G7Master(국제인쇄표준)
	GLOBAL G.A.P(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국제유기농산물규격)	GRS(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국제노동기구)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클린룸인증)	ISO 12500(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용접ISO인증)	ISO 7096(토경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ON GMO(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OCS(유기농산물인증)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OK Biobased(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생분해성인증)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골프공공인구)	RoHS(유해물질사용제한)	RSPO(국제친환경팜유인증)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QF(식품품질안전)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리튬배터리운송안전성시험)	USB-IF(USB임플리멘타스포럼)
	Visa PayWave(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Wi-Fi상호운용성인증)
	WPS(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상기 외 민간인증의 경우는 인정 불가